

울산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3가단1267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천성연

변론 종결2024. 9. 13.

판결 선고2024. 11. 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21. 5. 27. 접수 제424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5. 10.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13,9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 약정을 하였는데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2차전1009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4,737,838원 및 그 중 13,9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3. 29.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 행위

C은 2021. 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21. 5. 27. 접수 제43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 사건 설정계약이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 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대출거래 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의 성립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반면, C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시 채무 원금만 계산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9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¹⁾으로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는바(이 외에 청송군에 대한 가압류 채무도 존재한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북 청송군 D 임야 7140㎡	임야	2,677,500원	2,684,640원	갑5-1
2	경북 청송군 E 대 974㎡	토지	24,544,800원	32,759,367원	갑11
합계	27,222,300원	35,444,007원			

이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관계(C은 피고의 외삼촌이다),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과정 등에 비쳐봤을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를 뒤집기

부족하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를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정민

별지

- 1) 피고가 C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다.
- 2) 원고와 피고 모두 위 가액에 다투지 아니하는바 변론종결시점에도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